

일반 구매 조건

(General Purchasing Terms and Conditions)

한국법 준거

목차	페이지
1. 정의.....	2
2. 적용범위.....	3
3. 계약 문서.....	3
4. 주문서 – 계약 체결 – 발행.....	4
5. 공급품/서비스의 변경	4
6. 정보, 조언, 경고	5
7. 인허가.....	5
8. 품질 보증, 검사.....	5
9. 관련 법령.....	6
10. 공급자 인력	8
11. 감사	8
12. 생산 탄력성.....	9
13. 납품.....	9
14. 공급품/서비스의 인수.....	10
15. 지연시 특별 구제수단.....	11
16. 가격, 송장청구 및 대금지급조건.....	11
17. 보증.....	13
18. 책임.....	14
19. 회사의 참여.....	15
20. 보험.....	15
21. 위험 및 소유권 이전.....	16
22. 지적재산권.....	16
23. 비밀 유지.....	18
24. 개인정보 보호	19
25. 샘플, 프로토타입, 도구	22
26. 계약 해지.....	23
27. 계약 해지 또는 만료의 결과	24
28. 예비 부품.....	24
29. 불가항력; 허용된 지연.....	24
30. 회사 웹사이트.....	25
31. 준거법 – 관할	25
32. 일반 조항	25

포레시아코리아 (주) (이하 "갑" 또는 "당사")와

(이하 "을" 또는 "공급자")는 자동차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의 거래를 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정의

아래 단어 및 표현은 그 본래 의미 여하에 불구하고, 본 계약에서 굵은 색으로 표기하여 사용할 경우 아래 명시한 의미를 가진다.

주문 확인서	을이 서명한 주문서 의 사본을 의미한다.
계열사(들)	어느 모회사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들. 여기서 " 지배 "(control)"란 해당 회사의 주식 또는 의결권의 최소 35%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Faurecia	갑 및 갑의 계열사들을 총칭한다.
Faurecia 면책 당사자	갑, 갑의 본사, 고객사 및 이들의 각 대표, 대리인, 초청인, 자회사, 계열회사, 유통업자, 최종 소비자 및 이들의 승계인 및 양수인을 의미한다.
계약서	제 3.1 조 "계약 문서"에 나열된 모든 계약 관련 문서를 의미한다.
감사 (Audit)	공급자 의 계약상 의무 이행과 공급자 의 생산수단 및 시설 (생산 공정, 설계 공정 및 품질관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에 대한 감사를 의미한다.
감사인	갑이 감사 수행을 위하여 임의로 지정한 인(들)을 말한다.
결함	중대한 결함 및 법적 결함을 의미한다. 공급품/서비스의 중대한 결함은, (1) 공급품/서비스가 합의된 품질 또는 사양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2) 본 계약에서 의도된 용도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3)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경우 그 품질 및/또는 용도가 합의되지 않은 경우, 고나례적인 용도에 적합하지 않고, 그 품질이 동종 품목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공급품/서비스의 법적 결함은, 공급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제 3 자가 여하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본 계약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또는 청구를 제 3 자가 인수한 경우는 제외)
고객사	갑의 고객사인 자동차제작사를 의미한다.
발행(서)	예상 주문서 에 따라 공급품/서비스 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가항력 상황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항력적 상황에 해당하는 사건 중 영향을 받는 계약 당사자가 계약상의 책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키는 임의의 사건을 의미한다. 을의 인력으로 제한되는 파업이나 하도급업자 의 파업은 이 계약 에 따른 불가항력 상황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상주문서(들)	주문서 중에서 공급품/서비스 의 주요 특징을 명시하되, 인도일 또는 인도물량 등 특정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주문서 를 의미한다. 정확한 인도일 및 인도 수량은 발행서, 납품 일정 기타 이와 유사한 문서에 따라 확정된다.
확정주문서(들)	갑이 발행한 공급품 의 모든 필요 특성(납기일 및 정확한 주문수량을 포함)이 포함된 주문서 (들)을 의미한다

주문확인서	을이 서명한 주문서 사본 또는 별도 확인서를 의미한다.
주문서(들)	예상주문서(들) 을 포함, 갑이 공급품/서비스를 주문하는 모든 문서를 의미한다.
당사자(들)	상황에 따라, 당사 및/또는 공급자 를 의미한다. (별첨 A)
특수 조건	본 계약에 정한 일반 조건과 별도로 당사자들이 정한 특정한 조건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문서 에 추가하여 제공될 수 있는 부록을 의미한다.
선재하는 권리(들)	지적재산권의 보호 여부, 성격, 매체 및 형태에 관계없이, 본 계약 체결 전에 이미 형성된 계약 당사자들 중 하나 또는 이 계약 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제 3 자에 의한 임의의 발명을 의미한다.
FOSS	오픈 소스 라이선스(Free and Open Source Software)에 따른 소프트웨어 (모든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포함)를 의미한다.
대금	제 16 조 "가격, 송장 및 결제 조건"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갑이 을에게 계약 이행을 고려하여 지불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대금 은 주문서 에 명시되어 있다.
공급품	이 계약 의 주된 모든 물품(들), 제품(들), 장비 또는 자재(들)을 의미한다.
성과물	지적재산권의 보호 여부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프로토타입 연구나 설계, 모델, 샘플, 제품 , 프로젝트 관련 도구나 장비, 그리고 도면, 소프트웨어 및 소스 코드(들)을 포함하여) 계약 이행에서 발생하는 선재하는 권리 이외의, 임의의 성격의, 임의의 매체의, 또는 임의의 형태의 요소를 의미한다.
서비스(들)	이 계약 의 대상인 서비스를 의미한다.
하도급업자(들)	공급자 가 공급품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산하거나 수행하도록 위탁하는 임의의 또는 모든 제 3 자를 의미한다.
장비	공급품/서비스 의 이행을 위하여 을이 제조하거나 제공한 견본품, 모델, 시제품, 칼리버 및 공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 부수 품목을 의미한다.
QAA (품질보증계약)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공급품/서비스 의 최소 품질 요구조건을 규정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품질 보증 계약을 의미한다.
개인정보	개인정보는 식별된 개인 또는 식별 가능한 개인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정보로,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기타 해당 자연인의 신체적, 생리적, 유전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또는 사회적 정체성에 관한 특유한 하나 이상의 요소로, 해당 개인을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2 적용범위

본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협상 결과로, 갑이 을에게 발행하는 모든 **주문서(PO)**에 적용된다. 그 결과, 본 **계약**에 따른 계약 조건에 포함되지 아니한 을이 제안하거나 **주문확인서**에서 제시한 계약조건 또는 주장은 계약 당사자들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계약문서

- 3.1 **계약서.** 계약서는 우선순위의 역순서대로 (i) **발행** (Releases), (i) **주문서(PO, Purchase Order)**, (ii) **위촉서** (Letter of Nomination, 적용 가능한 경우), (iv) **특수 조건** (적용가능한 경우), (v) **QAA (품질보증계약)** 및 (vi) **본 계약**으로 구성된다. 계약서의 규정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앞서 본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 3.2 **완결성.** 계약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전체 계약을 구성하며, 명시적이거나 함축적인, 그리고 서면이나 구두로 이루어진 이전의 모든 진술/합의에 우선한다.
- 3.3 **수정.** 일방 당사자의 계약서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공급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불합리하게 지연하거나 중단되어서는 아니된다. 계약의 수정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자들의 유효한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주문서(PO) – 계약 체결 – 발행

- 4.1 갑이 발행한 **주문서 ("PO")**는 우편, 이메일, 팩스 기타 갑이 선택한 전자적 수단으로 발송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주문서를 발송한 날로부터 십 (10) 일 이내에 을이 우편, 이메일, 팩스 기타 갑이 승인한 전자적 수단으로 **주문 확인서**를 발송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갑과 을이 본 계약에 명시된 주소(이메일 주소, 팩스 번호 포함)로 **주문서** 또는 **주문 확인서**를 발송한 경우 발송한 때 주문서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 4.2 갑은 을로부터 **주문 확인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주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 취소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갑이 을로부터 주문 확인서를 수령하기 전에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을은 주문 확정, 보상, 피해보상 기타 어떤 성격의 claim을 제기할 수 없다.
- 4.3 을이 **주문 확인서**를 발송하지 않고, 갑이 4.2조에 따라 주문을 취소하지 않았으나, (i) 을이 해당 **주문서**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의무를 이행한 경우 및 (ii) 갑이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해당 **주문서**에 따른 계약 부품을 수령한 경우 4.1조의 예외로서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것으로 본다.
- 4.4 제4.1조의 규정은 발행(서)에 대하여 준용된다. 각 발행(서)는 (발송 및 예상주문서의 수락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그 결과, 을이 특정한 발행(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을은 그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경제적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발행서를 반복적 또는 계속적으로 불이행하는 것은 본 계약 제24조에 따라 관련 계약의 해제사유가 될 수 있다.

5 공급품/서비스의 변경

- 5.1 **변경.** 갑은 언제든지 을이 공급하는 **공급품/서비스**에 대한 변경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을은 갑이 요구하는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 가능성 및 기술적, 상업적 효과를 검토하고, 갑에게 합리적인 기간 내에 변경사항의 실행과 관련한 서면 제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을의 제안은 해당 변경에 따른 효과 상세 (특히 품질, 안전, 비용 및/또는 **공급품/서비스**의 공급시기와 관련하여)를 포함하여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함께 첨부되어야 한다. 갑이 제안한 변경사항이 품질 또는 안전과 관련한 경우, 을은 지체 없이 해당 변경 제안을 검토하고 관련 제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 5.2 변경내용의 확정.** 만일 갑이 제5.1조에 따른 을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변경사항의 실행에 앞서 본 계약에 필요한 모든 조정 사항 (특히 사양, 도면, 가격, 공급일정 및/또는 기타 기간과 관련하여 필요한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5.3 분쟁 해결.** 계약 당사자들이 5.1조 및 5.2조에 따른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갑은 갑의 선택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해결방안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5.3.1** 을의 변경 제안을 거절하고 기존에 합의된 **주문서** 기타 본 계약에 따른 이행을 요구할 권리
- 5.3.2** 만일 변경사항이 품질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수적이거나 **고객사** 요구사항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을이 합리적 기간 내에 변경사항 이행을 거부하거나 합리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경우, 제 3자로 하여금 변경사항을 실행하도록 할 권리. 이 경우 을은 갑이 변경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도면, 기술 명세서 및 기타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 5.3.3** 제 5.3.2 조의 경우 본 계약 제 26 조의 규정에 따라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
- 5.4 변경 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급품/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6 정보, 조언, 경고

정보 공유. 을은 **공급품** 공급 및/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전문가이다. 그에 따라, 을은 갑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하거나 유용한 모든 정보, 조언 및 경고 (특히 품질 및 안전 문제 관련)를 갑의 능력 및/또는 노하우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을은 다음과 같은 정보제공, 조언, 경고를 제공하여야 한다.

- 을은 갑에게 **공급품/서비스**의 적절한 보관 및 사용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 을은 **공급품**의 기술 명세서(Specifications)가 충분하고 적절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나아가, 기술 명세서에 **공급품**을 포함하는 부품이 판매, 배포 또는 사용될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규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려야 한다.
- 을은 **공급품/서비스**에 품질 문제 risk 또는 기타 부적절한 사항을 알게 될 경우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한다. 나아가, **공급품/서비스**에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특히 그런 **결함**으로 인해 사람이나 재산의 안전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경우), 갑에게 이를 즉시 경고해야 한다.
- 을은 **공급품/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조치가 있으면 이를 갑에게 제안한다.

7 인허가

- 7.1** 필요한 경우, 을은 본 계약에 명시된 정부 기관 또는 단체의 인가/라이선스/허가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본 계약 기간 동안 필요한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인허가를 변경하여야 할 가능성 및 실제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알리고,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7.2** 을이 제7.1조에 명시한 인허가와 관련한 책임을 위반하는 경우, 갑은 계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8 품질 확보, 조사

8.1 품질 관리. 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함으로써, 을은 갑의 **품질보증계약 (QAA)**을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 **QAA** 및 갑이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기타 품질 관리 항목들은 이미 을에게 제공되었으며, 을은 해당 규정 및 조건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동의하며 이를 확약한다. QAA는 갑에 의하여 수시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을은 QAA에 대한 접속 권한을 통해 이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알리고 품질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8.2 공급자 시설 점검. 갑은 수시로 필요한 경우 을의 시험, 검사, 품질 관리 및 신뢰도 조사 절차 및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고 조사할 수 있다.

만일 갑 또는 갑의 대표자, 수급인, 공급자 또는 **고객사**가 품질 관리 등 목적으로 을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부지에 들어가는 경우, 을은 (i)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Faurecia 면책 당사자들**을 면책하고 방어하여야 하고, (ii) 을 및 을의 대표자들은 모든 해당 부지에 적용되는 노동, 건강, 안전 및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장한다. 갑 또는 갑의 대표자, 수급인, 공급자 또는 **고객사**의 품질 점검은 본 계약에 따른 품질 관리 목적상 필요하고 합리적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8.3 공급품 검사 권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그리고 본 계약의 이행 및 품질 확인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갑 및 **고객사**는 제조 기간 내에 제조 장소에서 언제나 실행 가능한 한도 내에 **주문서**의 이행에 활용되는 모든 원자재, 기구, 자본,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조사 및 시험 권한을 가진다. 만일 위 조사 또는 시험이 을의 사업장 또는 을의 **하도급업자** 기타 을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을 또는 해당 하도급업자 또는 수임인은 추가 비용 없이 시설 제공을 포함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본 조에 따른 조사가 있더라도, 갑의 권한 있는 대표자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갑이 조사의 대상이 된 **공급품/서비스** (관련 제조 공정 중인 부품 기타 물리적 재고를 포함)가 **주문서**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승인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회사 또는 회사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한 검사 또는 승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발견된 현존하는 **결함** (잠재적이든 명시적이든 불문하고)에 대한 수령거절 기타 구제방법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을은 추가 비용 없이 **주문서**에 따른 이행에 활용될 수 있는 원자재 및 인력을 충족하는 갑이 승인할 만한 시험 및 검사를 위한 시스템 (품질 관리 및 신뢰도 조사 절차를 포함하여야 함)을 제공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8.4 검사에 따른 면제 없음. 을의 **주문서** 및 **QAA**에 따른 제반 의무 및 보증을 엄격하고 완전하게 이행하여야 할 책임은 (i) **주문서** 이행을 위하여 활용되는 원자재, 기구, 자본, 장비 및 인력에 대한 갑(또는 **고객사**)의 검사 또는 시험, (ii) 을의 시험, 검사, 품질 관리 또는 신뢰도 시험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갑의 검토 및 검사, 또는 (iii) 갑의 **공급품/서비스** 수령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또한, 갑의 **대금** 지급은 갑이 계약 내용을 충족하지 못하는 **공급품/서비스**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9 법률 및 법규

9.1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법령 (노사관계, 보건, 안전 및 환경 관련 법규를 포함)을 준수한다.

- 을이 갑의 사업장 내에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갑의 사업장 내에서 적용되는 갑의 안전 지침 및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1989 년 11 월 20 일자 UN 아동의 권리에 대한 조약의 규정을 준수한다.
- 강제 노동 근절에 관한 1957 년 6 월 25 일자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 1 조에 정의된 강제 노동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하지 않는다.

9.2 을은 본 9.1조에 명시된 의무는 본 계약상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9.3 **사업장 보건, 안전 및 환경 지침.** 갑 또는 **고객사** 사업장에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을 및 을의 인력은 항상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보건, 안전 및 환경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고, 각 사업장에 공지되고 통용되는 적용 가능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직원들에 대하여 자체적인 개인보호장비 (PPE) 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PPE는 관련 법령 및 갑 또는 **고객사**가 요구하는 최소 요구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을은 관련 규칙 및 정책에 반하는 을의 직원을 갑 또는 **고객사** 사업장에서 배제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인력을 자신의 비용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을은 을의 임직원에 대한 보건, 안전 및 환경 관련 책임은 을의 책임이라는 점을 확인하며, 갑 또는 **고객사** 사업장에서 을의 임직원에 보건, 안전 또는 환경 관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갑을 면책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을은 또한 Faurecia 윤리 규정 및 행동 강령 (Faurecia Code of Ethics and Faurecia Code of Conduct)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윤리규정 및 행동강령에 포함된 내용을 을의 협력업체, 하도급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와의 계약상의 관계 내에서 준수하기로 약속한다. 을은 Forvia 윤리 규정 및 행동 강령을 제공받았음을 확인하며, 해당 규정 및 강령은 아래 URL 주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forvia.com/sites/default/files/2024-05/Code%20of%20Conduct%20for%20Suppliers%20and%20Service%20Providers.pdf>
<https://www.forvia.com/sites/default/files/2024-02/FAU-C-LSG-2400%20Code%20of%20Ethics%20KR.pdf>

9.4 을이 갑 및 갑의 계열사 임직원이 Faurecia 윤리 규정에 정한 기준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그러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을은 을 및 을의 관계회사, 이사, 임원, 직원, 대리인, 서비스 공급자, 협력업체 및 을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모든 자가 항상 본 계약에 적용되는 반부패 법령 및 수출 통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보증하고, 준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불법 또는 부적절한 이익을 얻거나 기타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포함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도록 하기 위하여 어떠한 자에게도 직·간접적 상업적 뇌물 공여, 공여 제안 행위 또는 공여 제안 수권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이 포함된다.

을은 을 또는 을의 관계사가 반부패법령의 준수를 위한 정책, 절차 및 제도를 구비하고 있음을 진술 및 보증한다.

을은 을의 하도급업자, 협력업체, 대리인 기타 관련 제 3 자가 본 조항에 따라 행위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을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하도급업자, 협력업체, 대리인 기타 관련 제 3 자와 거래에 있어서 (a) 그러한 거래 전에 합리적인 반 부패 실사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도 정기적인 실사를 진행하고, (b) 본 9.5 조의 조건에 못지 않은 반부패 의무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해당 인력을 관여하도록 하지 않는 한 해당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이 요청할 경우, 을은 위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을은 (i) 을이 반부패법령 및 수출통제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ii) 본 9.5 조를 준수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갑, 갑의 계열사, 임원, 이사 및 직원들을 어떠한 손실, 손해, 책임, 청구, 요구 또는 비용(법률비용 기타 전문가 비용을 포함) 상환책임으로부터 면책하도록 하여야 한다.

보다 명확하게 하면, 을의 본 9.5 조 미준수 및/또는 위반은 본 계약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며, 갑은 갑과 현재 체결되어 있는 모든 계약을 즉시 해지할 권한을 가지며, 모든 협상을 보상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이러한 취소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나아가, 이러한 해지/취소는 갑이 법령상 보유하는 다른 권리/치유 방안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본 9.5 조의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해당 행위의 원인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claim 이 제기되어야 한다 (단, 본 계약 또는 해당 claim 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이 소멸시효를 규정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으로 소멸시효를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9.5 부패방지 관련 문서화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에게 을의 임직원, 대리인 또는 지정인과 공직자 사이에 진행된 갑의 사업이 논의되는 회의 (또는 갑의 재량에 따라 향후 6개월 이내에 예상되는 회의)에 관한 서면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해당 서면 기록은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i) 을의 대표자 (회의 참석자) 성명, (ii) 공직자의 이름 및 직위 (개최 예정 회의의 경우는 가능한 범위에서), (iii) 회의 목적사항, (iv) 논의 사항 (또는 논의될 사항), (v) 공유되거나 공유 예정인 모든 서면 회의자료, (vi) 회의 당사자들 사이에 금전 기타 이익 제공 또는 제공 요구 사항 (있는 경우), 및 (vii) 을의 대표자의 비용 지출 상세보고 (모든 증빙자료 원본 첨부).

본 9.5 조의 목적상 "공직자"는 정부 부처 또는 정부기관의 대리인 및 공공 국제 기구 기타 공적인 역할로 행동하는 자 및 그 임원, 직원, 계약자, 대리인 또는 정부, 정부부처, 기구 기타 공공 국제기구의 대표자라 지칭하는 자를 의미한다.

9.6 을의 위반 책임. 보다 명확하게 하고, 본 계약에 명시된 일반적인 면책 의무와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을 또는 을의 협력업체가 본 9조에 정한 규정들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본 조에 규정된 치유 사유 (Faurecia 측에 의한 즉시 해지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더하여, 을은 (i) 을의 반부패법령 및 수출통제법령 기타 규정 미준수 및/또는 (ii) 을의 본 9조 미준수 또는 위반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Faurecia 면책 당사자들**을 면책시켜야 한다.

10 공급자 인력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을의 감독 하에 일하는 모든 직원, 임시근로자, 계약자 기타 대리인의 감독, 관리 및 급료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자격을 갖춘 대리인들을 이용하여야 한다.

11 감사

11.1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그리고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갑은 합리적인 사전 통지 후 을의 통상 업무 시간 중 언제든지 **감사** 권한을 가진다. 본 **감사**의 범위 내에서, 갑은 무엇보다 QAA 조치사항, 개인 정보 보호 조치 사항 및 인도 전 공급품을 확인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11.2 일반적으로, **감사** 5 일 전 사전통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통지는 합리적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갑은 **감사**를 진행하더라도 을의 사업활동을 불필요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11.3 을은 **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사인**에게 최대한 협조할 의사를 확인한다. 특히, 을은 **감사인**에게 생산설비 기타 장소의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요청받은 문서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또한 계약에 명시된 품질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위하여 공급품을 무작위 샘플로 수거할 권한을 가진다.
- 11.4 감사 결과 을이 합의된 품질 기준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을은 즉시 언급된 품질 기준 또는 요구사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합리적인 모든 방안을 취하여야 한다. 특히, 을은 감사 기간 동안 합의된 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 11.5 만일 **감사**가 갑에 책임을 돌릴 수 없는 계약 이행과 관련한 문제 (품질 문제, 물류 문제 및 개인정보 정책 위반 등)에 대응하여 진행되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합리적인 문서 증빙 자료가 있는 **감사** 관련 비용을 청구서 수령 후 이십(20)일 이내에 전신 송금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 11.6 보다 명확하게 하면, 본 조에 따른 **감사**는 갑의 모든 권리 (특히 보증 및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지권 포함)는 본 조에 따른 감사, 감사 과정 또는 감사 이후 취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특히, 을은 독자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이를 자주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갑은 본 감사의 범위 내에서 을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만 을을 지원하여야 한다.

12 생산 유동성

- 12.1 **예상주문서**(Open Order)에 기재된 수량은 정보 전달 목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갑이 그 수량을 보장한 것이 아니며, 실제 물량은 **발행서**(Release)에 따라 확정된다. 서명으로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갑은 **공급품/서비스**를 갑으로부터만 독점적으로 공급받을 의무는 없다.
- 12.2 **고객사**가 공급품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차량의 물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갑이 을에게 추가 물량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본 계약에 정한 조건에 더하여 추가적인 **공급품/서비스** 요청을 기 합의된 **대금**에 추가 비용 없이 이행하는 데 동의한다.
- 12.3 **고객사**가 **공급품**을 이용하여 생산되는 차량의 물량을 감소시키거나 차량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 갑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은 권리를 보유한다.
- 물량 감소의 경우, 추가 비용 없이 을에게 주문하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 생산 중단의 경우, 본 계약 제26.3조에 따라 사전 통지 후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 12.4 을은 본 12조에 명시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생산시설을 구성하여야 한다. 각 계약 당사자는 그러한 상황에 따른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13 납품 (DELIVERY)

13.1 납품 조건

- 13.1.1 **주문서**(PO)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급품**의 납품은 "FCA [지정 장소]" (Incoterms 2010년판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조건으로 한다. 납품 장소 및 납기는 **주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13.1.2 **공급품**은 본 **계약**에 따라 합의된 물류 요구사항에 정해진 대로 납품되어야 한다. 특히, 납품 관련 문서는 위 물류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13.2 포장

- 13.2.1 을은 **공급품**을 운송, 선적 또는 도착지에서의 저장 과정에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운송 방식에 적합한 합리적 방식으로 포장할 책임이 있다. 을은 **공급품**을 포장함에 있어 **주문서**, 특수 조건 및

Faurecia.com에서 확인할 수 있는 Faurecia 공급자 물류 매뉴얼 및 라벨 품질 절차 (Faurecia Supplier Logistics Manual and Label Quality Procedure)에 포함된 조항에 맞게 포장하여야 한다.

- 13.2.2 포장 및 라벨 표시는 해당되는 모든 법률과 법규, 그리고 **주문서**에 명시된 내용에 부합하여야 한다.
- 13.2.3 공급품이 위 조건, 을의 지시 및/또는 **주문서** 또는 **발행서**에 기재된 지시 (있는 경우) 에 엄격히 부합하는 상태로 선적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사안 및 상황에 따라 초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거나 을에게 구상하여야 한다.

13.3 납기

- 13.3.1 일시 또는 마감일은 본 **계약**에 기재되어 있다. 서비스의 이행 시기 또는 마감일 및/또는 공급품의 납기는 갑에게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이다. 을은 공급품이 납기일까지 납품되지 아니하거나 서비스가 위 일시 또는 마감일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
- 13.3.2 **공급품**의 조기 납품 및/또는 서비스의 조기이행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 13.3.3 을은 **예상주문서**(Open Orders)의 전 기간 동안 공급품/서비스의 적기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예상주문서**를 위하여 합리적인 백업 프로세스 및 긴급시 조치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백업 프로세스 및 긴급시 조치계획은 최소한 자동차 산업의 일반 관행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4 공급품/서비스 인수

- 14.1 납품이 있는 경우, 갑은 납품된 공급품에 형식, 수량 및 외관상 명백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결함**이 확인된 경우 신속히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 통지가 납품 후 5 영업일 내에 발송되는 경우는 항상 적기에 발송된 것으로 본다. 나아가, 갑은 **공급품**이 통상적인 생산 공정의 범주 내에서 제작된 것인지 여부를 검사하고, 만일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이를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입고 물품 검사와 관련한 관련법 또는 국제 물품 판매에 관한 UN 협약의 조항에 따른 추가적인 요구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 14.2 **서비스 거부.** 갑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 **서비스**를 서면으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 i. **서비스**의 이행 완료일에 서비스가 사소한 부적합 또는 **결함** 이외의 사유로 유보사항 없이 객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 ii. 갑의 유보사항들이 사소한 부적합 또는 **결함** 이외의 사유로 계약 당사자들이 정한 기한 내에 철회되지 않은 경우; 또는
 - iii. 을이 **서비스** 이행 일정 또는 완료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 14.3 **하자 및/또는 부적합 공급품/서비스.**
- 14.3.1 어느 **공급품/서비스**가 본 **계약**, **QAA**, **특수조건**, **주문서**, **기술 명세서**, **고객사** 요구사항, 기타 관련 법령 기타 계약 당사자들 사이의 서면 합의사항(**작업명세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 포함된 보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갑은 언제든지 다른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본 **계약** 해지권, 보상적 손해배상 청구권 및/또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
 - a. 을에게 해당 **공급품**을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요구할 권리. 을이 하자 및/또는 부적합한 **공급품/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을은 해당 **공급품**의 생산 또는 납기일정과

관련하여 어떤 이의 또는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다. **서비스**의 경우 즉시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다시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b. 부적합한 **서비스**를 갑이 지정한 제 3자로 하여금 이행하게 할 권리. 해당 비용은 전적으로 을이 부담하며, 을은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c. 해당 **공급품/서비스** 대가 환불권.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환불하여야 한다; 또는
- d. 기타 하자 있거나 부적합한 공급품/서비스에 대한 만족할 만한 처리 방안 (적용가능한 한도에서, 리콜, 청구 조정 기타 유사한 프로그램을 포함함). 해당 처리방안은 갑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갑은 그 처리방안을 취할 지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해당 비용은 을이 단독으로 부담한다.

14.3.2 거절된 공급품은 을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갑의 거절 통지일로부터 8 일 이내에 회수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갑이 그 선택에 따라 을의 단독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거절된 공급품을 폐기하거나 을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갑은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합의한다.

14.3.3 갑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기한 기타 한도 내에 해당 위반사항 또는 부적합사항을 치유하지 못하거나 달리 치유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기한 기타 한도를 을에게 알렸는지 여부를 불문함), 또는 해당 위반 또는 부적합이 그 성격상 갑이 요구한 기한 기타 한도 내에 치유될 수 없는 경우, (i) 갑은 하자있는 또는 부적합한 특정 **공급품/서비스**에 대한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ii) 갑의 단독 재량으로 교정, 수리, 교체 기타 시정을 위한 업무, 절차 및 프로그램에 대한 통제권을 인수할 수 있으며 (보다 명확히 하면, 갑이 통제권을 인수할 의무는 없음), 이 때 을은 갑에게 제반 관련 비용 및 경비 (제3자 또는 갑의 내부 처리, 분류, 분리/보류, 재작업 및 행정 비용, 인건비 및 자재비를 포함)를 지급하거나 상환하여야 한다. 을에 대한 통지 후에는 모든 하자가 있거나 부적합한 공급품에 대한 위험은 을이 부담한다.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공급품을 을의 위험부담으로 반환할 수 있고, 모든 취급비, 분류, 분리/보관비, 취급 수수료 및 운송비, 운임 및 배송비 (본래 지정 목적지로의 비용 및 지정 목적지에서 반출하는 비용을 포함함)와 기타 모든 관련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갑이 을에게 하자가 있거나 부적합한 공급품/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경우, 시정, 수리, 교체 기타 만족스럽게 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을의 본 조항에 따른 보증은 시정, 수리 또는 교체된 **공급품/서비스**에도 적용된다.

14.3.4 갑은 (a) 완료일 현재 서비스가 유보 없이 사소한 부적합 또는 하자 이외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b) 사소한 부적합 또는 하자 이외의 사유로 당사자들이 정한 기한 내에 유보사항이 철회되지 않은 경우, 또는 (c) 을이 서비스 인도 일정 또는 완료 일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14.4 계약특수조건/**주문서**에는 추가적인 승인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15 지연에 대한 특별 구제수단

15.1 을이 본 **계약**에 정한 **공급품/서비스**의 인도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불이행 사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었던 시점 이후 작업완료일까지 순 단가의 0.2% (서열 납품의 경우 0.4%)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 (단, 그 총액은 해당 **완료 주문서** 또는 **납품 요청서**에 정한 순 단가 총액의 10%를 넘지 아니한다). 을은 위 사항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본 지체상금은 갑의 손해배상 청구 및/또는 본 **계약** 및/또는 관련 **주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 해지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5.2 갑이 지연된 **공급품/서비스**의 납품 또는 이행을 수령한 경우, 갑은 해당 대금을 전부 지급하기 전에 을에게 지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5.3 을의 **공급품** 납기 지연 또는 결품으로 인하여 **고객사**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경우, 을은 이로 인하여 갑이 **고객사**에 부담하는 패널티 금액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6 대금, 송장 청구 및 지불 조건

16.1 일반 조항

16.1.1 갑은 본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6.1.2 **대금**은 **공급품/서비스**에 대한 일괄 보수에 해당하며, 을에게 **공급품/서비스**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비용 (**선재하는 권리 및 성과물 사용권, 성과물**의 이전, 운송, 행정비용, 제세공과금, 관세, 부수적인 대가 및 품질관리를 위한 지출을 포함함)을 포함한다.

16.1.3 을은 주문 확정서를 발송하거나 **공급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행을 시작함으로써 갑으로부터 대금 결정에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수령하였거나 다른 출처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다. 나아가, 을은 자동차 협력업체 사업의 상황과 특수성을 잘 알고 있으며, 대금 결정에 있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였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이유로, **대금**은 확정된 최종 금액이다. 본 계약의 다른 조항 및 법령이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을은 시장환경, 특수사정, 정보 부족, 본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본 계약 해지 등의 사유를 들어 가격 조정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전술한 사항에 불구하고, 만일 **주문서**에 가격 조정 방식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금이 조정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각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계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금 조정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들은 서면 요청서를 수령한 후 10일 이내에 선의로 해당 요청을 허용할 지 여부를 회합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특히 요청일 현재 존재하는 재정적, 경제적 제약 (고객사가 가격 조정을 지원하려는 의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고려하여 성실하게 논의한다.

만일 위와 같이 성실한 협상 후에도 당사자들이 요청받은 대금 변경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법령에 허용하는 한, 변경을 요청한 당사자는 협상 종료 후 8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급품/서비스** 이행을 계속할 의사, 본 계약 제26조에 따른 해지 의사 또는 본 계약 제29조에 따라 관할 법원 또는 기관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의사를 밝혀야 한다.

협상 과정에서 그리고 계약 해지 및/또는 관할 법원 또는 기관이 최종 구속력있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본 **계약**에 따라 **공급품/서비스**는 계속 이행되어야 하며, 그 가격은 **주문서**에 기재된 조건에 따른다. 나아가,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관할 법원 또는 기관의 구속력 있는 결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을은 갑이 대체 공급자를 구하고 이관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 동안 본 계약 및 주문서에 정한 조건으로 계속 공급할 의무가 있다.

16.2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

제 16.1 조에 불구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공급품의 단가는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조정되며, 갑과 을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 조정과 관련하여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한다.

16.3 관세 및 세금

대금은 적용되는 세금 및 관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을은 적용가능한 모든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세금 및 관세를 송장에 추가한다.

16.4 송장(세금계산서) 발행

각 송장은:

- 특정 **주문서** (**주문서** 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와 관련되어야 한다;
- **공급품** 납품일 또는 **서비스** 수령일 이후 가장 빠른 날자에 발행되어야 한다;
- **공급품/서비스**를 식별 및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주문서** 번호 포함)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대금 조건과 관련한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그리고
- **주문서**에 명시된 청구 주소로 두(2) 부를 보내야 한다. 송장은 **공급품**을 납품할 때 첨부할 수 없다. 갑은 상기 요구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송장에 대하여 거절, 반환할 수 있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6.5 대금 지불 조건

16.5.1 유효한 관련 법령 규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대금은 갑이 송장 발행일로부터 60일("**지급기일**")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

16.5.2 지연이자 는 송장에 명시된 지급기일 익일부터 기산되며, 어떠한 최고도 필요하지 않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율은 연 15.5%이다.

16.6 상계

갑은 을에 대한 반대청구권으로 을의 대금청구권 기타 갑에 대한 금전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17 보증

17.1 주문서 또는 위촉서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결함**에 대한 청구권은 납품일 또는 각 공급품/서비스 수령 승낙일로부터 36개월이다. 위에 기재한 바에도 불구하고, 공급품/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른 모든 보증 (묵시적, 명시적 보증을 불문함)이 적용된다.

17.2 을은 을이 여기에 계약한 관련 자동차, 전자 기타 산업 분야 (특히 품질, 원자재 원가 가용성, 노동력 및 리드 타임 측면에서)의 전문가라는 점을 진술한다. 을은 해당 산업분야의 기준 및 갑과 고객사들이 해오던 것과 같은 관행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할 능력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를 준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을은,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공급품/서비스의 생산 및 공급품/서비스의 당초 의도된 대로의 적합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공급품/서비스의 설계(만일 설계 책임이 을에게 할당된 경우), 제조 공정 및 기술적인 선택 결과에 대한 의무 및 엄격한 책임을 부담한다. 갑이 도면, 공정, 사양 또는 초기 샘플을 수락 또는 검증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 을의 보증 책임을 경감하지 않는다.

17.3 을은 다음 사항을 진술 및 보증한다 (결과에 대한 의무로서):

- **공급품/서비스**는 의도된 용도가 있는 경우 (을이 공급품의 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갑이 정한 부품, 시스템, 하위 시스템 및 차량 배치에서의 성능 및 공급품이 작동하거나 합리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에서의 성능을 포함하여) 그 용도에 적합하고, 의도된 용도가 명시적으로

합의된 바 없는 경우라면 통상적인 사용에 적합하며, 의도된 용도에 따른 사용 연한 동안 **결함** 없이 작동되도록 설계되었다;

- **공급품/서비스**는 이를 정의하는 도면, 명세서, 검증서 및 기타 모든 문서 자료와 일치한다;
- **주문서** 또는 위에서 언급한 서류에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공급품/서비스**는 초기 샘플에 부합하게 제공된다; 및
- **공급품/서비스**는 자재 및 제조 기술상 **결함** (드러난 **결함**과 숨겨진 **결함**을 포함)이 없다.

17.4 특수 보증. 을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한 (**성과물**에 포함되어 있거나 또는 **성과물**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와 관련하여, 을은 다음 사항을 보증한다.

- **성과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FOSS** 포함) 및 그에 대한 라이선스 (**오픈 소스 라이선스** 포함)는 성과물 및 프로젝트 목적에 부합한다;
- **성과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및 그 라이선스 (**FOSS** 및 **오픈 소스 라이선스** 포함)의 완전성, 오차 없음 및 정확성 및 을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준수하였다는 점;
- 적용가능한 라이선스, 특히 **FOSS**와 관련한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규정 준수. 이에는 원 라이선스 및 "저작권" 통지 문구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사항 및 (해당되는 경우) 관련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소스코드를 갑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성과물**에 사용된 **FOSS**의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갑, 고객사 또는 고객사의 딜러사가 인증정보, 암호키 및/또는 차량 제어 장치의 코딩과 관련한 기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는다;
- 갑이 승인하지 않은 **오픈 소스 라이선스**, 특히 **Copyleft 오픈 소스 라이선스** 또는 비호환 라이선스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과물에 포함된 **FOSS**를 위하여 동의할 만한 **FOSS** 툴 (Blackbuck 또는 Palamida)의 사용; 및
- 사용된 다양한 **FOSS**의 호환성 및 **성과물**에 포함된 독점적 라이선스와의 호환성.

17.5 공급품/서비스와 관련한 갑 또는 고객사가 개시한 검사, **감사**, 논의 및 분석에 있어,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7.6 공급품/서비스가 상기 보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을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갑의 요청에 따라 **공급품**을 수리 또는 교체하거나 **서비스**를 시정 또는 재실시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본 계약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른 갑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계약 해지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7.1조에 명시된 보증기간은 공급품/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기간만큼 연장된다. 만일 공급품/서비스가 수리 또는 교체된 경우, 수리 또는 교체된 부품에 대한 보증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을은 또한 **공급품/서비스**에 대한 을의 작위, 부작위 또는 과실 및/또는 을의 보증위반과 관련하여나 이로 인하여 **Faurecia 면책 당사자**들에게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이들을 면제, 방어, 면책하고 해를 입히지 아니하여야 한다.

18 책임

18.1 을은 을 및/또는 을의 **하도급업자**에 의해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며, **공급품** 및/또는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고객사** 포함)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을은 그러한 손해이나 손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해 을의 책임에 비례하여 갑에게 배상하기로 동의하며, 그 중에는 **고객사**가 갑에 송장으로 청구한 모든 추가 비용과 그 외의 것이 포함된다. 을은 공급품/서비스와 관련하여, 을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갑, Faurecia의 계열사 또는

고객사가 제기한 리콜 캠페인, 시정 조치 (서비스캠페인) 기타 위기 대응 조치와 관련한 모든 비용에 대하여 을의 책임에 비례한 범위에서 갑 또는 Faurecia 그룹의 여하한 계열사를 면책, 방어하고 해를 입히지 않기로 한다.

- 18.2 을은 해당 업종의 전문가로서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갑의 지원의 정도에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적인 결정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 18.3 갑이 초기 샘플을 수락한다고 해서 **공급자**가 결함, 손상 또는 손실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납품된 및/또는 납품할 **공급품/서비스**를 수락한다는 의미를 포함하지 않는다. 갑이 **공급품**을 수령한다고 하여 결함이 발견된 시점에 관계없이, 그리고 소유권과 위험 부담의 양도에 관계없이, 감추어져 있거나 은폐된 결함에 대하여 을이 부담하는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18.4 갑이 갑에게 제공된 **공급품/서비스** 및/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클레임에 대한 어떤 손실, 책임 또는 손해(변호사 비용을 포함)에 대한 전체 책임은 그 청구 형태를 불문하고, 을이 실제로 입은 직접 손해 및 을에게 합리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 제한되며, 충분하고 납득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갑에게 제시된 경우에 한한다.

19 갑의 참여

- 19.1 을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모든 기술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19.2 갑의 제안 기타 참여 행위는 조언 또는 권고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적인 결정 또는 지시로 보지 아니한다. 갑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을은 독자적으로 그 기술의 타당성, 개연성, 진보성, 불일치 여부, 실질적 정확성 및 완전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스스로의 결정으로 채택한다. 만일 을이 자체 검토 결과 부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조언 또는 권고를 이행한 경우, 을은 갑이 서면 (대표권한 있는 갑 직원 2인의 서명을 포함)으로 그러한 지시를 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19.3 갑의 제안 기타 참여행위는 을의 **결함** 없는 **공급품** 제공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하며, 을은 모든 기간 및 기한을 준수하여야 한다.

20 보험

- 20.1 을은 본 계약에 따른 갑, 고객 또는 제3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부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비용으로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평판이 좋은 보험 회사의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을 유지하여야 한다. 해당 보험에는 신체 상해, 재산 손해 기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갑 및 **고객사**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장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2 보험은 을 및 제3자 (갑 및/또는 **고객사**를 포함)가 시행하는 결함시정조치를 위한 모든 비용을 부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을은 갑 및/또는 **고객사**의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며, 을의 보험회사로부터 그러한 포기를 받도록 조치한다.
- 20.3 부보금액은 갑과 을의 합의로 정하되, 신체 상해, 재산 손해 및 갑 및/또는 **고객사**의 리콜에 따른 손실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 20.4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보험계약 체결 및 그 보험금 납입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하게 갑에게 제공한다.
- 20.5 보험을 유지하는 것은 갑의 책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이는 또한 을의 보상적 손해배상 의무와 관련한 금액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20.6 을은 어떤 이유로든 보험이 변경, 수정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이를 신속하게 갑에게 알려야 한다..

21 위험 및 소유권 이전

21.1 소유권 이전

21.1.1 **공급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본 계약에서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 제13.1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공급품**을 납품할 때 이루어진다.

21.1.2 만일 을이 소유권 이전 이후에도 갑을 위하여 **공급품**을 보관하는 경우, 을은 해당 **공급품**을 별도로 제작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고, 갑의 재산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을은 해당 **공급품**을 갑에 대한 추가적인 **공급품/서비스**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사용목적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21.1.3 을은 **공급품**을 갑에게 납품한 이후에는 갑의 명시적 동의(이는 불합리하게 유보되지 아니함) 없이 **공급품**의 소유권을 유보할 권한이 없다.

21.1.4 을은 **공급품** 또는 **공급품**의 일부에 대하여 그 하위 협력업체 및 **하도급업자**가 소유권을 유보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1.2 위험 부담 이전

21.2.1 **공급품**의 인도는 FCA 조건 (주문서 기재 장소 인도, 이하 "**인도장소**")으로 하여야 한다. 을은 인도장소까지 **공급품**을 **인도장소**에 인도할 때까지 **공급품**의 파손 기타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한다.

22 산업재산권 및 지적재산권

22.1 선제하는 권리

22.1.1 각 계약 당사자는 **선제하는 권리**의 소유자 지위를 유지한다. 상대방 계약 당사자가 **선제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것은, 본 계약 22.1.2조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계약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어야 허용된다.

22.1.2 을에게 속하는 **선제하는 권리**가 **성과물** 및/또는 **공급품/서비스**의 사용 및 추가 개발에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그 **선제하는 권리**의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만일 을이 제3자의 조력 없이 **선제하는 권리**의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사이에 갑에게 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합의하여야 한다.

22.1.3 관련 **주문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급품**의 대금에는 을이 **선제하는 권리**의 사용권을 부여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22.1.4 갑이 을에게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요구목적,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한 권리귀속관계,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지급방법,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위 사항과 갑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2.1.5 갑이 위 제22.1.4조와 같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갑과 을은 해당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사용기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 명단, 비밀유지의무, 목적 외 사용 금지, 비밀유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의무 위반시 배상의 내용과 기술자료의 반환, 폐기 방법 및 일자를 명시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2.2 성과물

22.2.1 모든 **성과물**은 갑에게 속한다. 성과물의 소유자로서, 갑은 모든 국가에서 성과물을 자유롭게 사용하고, 사용권한을 부여하며 운영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을 또는 제3자의 성과물 사용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22.2.2 필요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을은 **성과물**에 대한 모든 소유권 기타 우선권을 갑에게 양도하는 것이 요구된다. 만일 그러한 양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을은 갑에게 해당 권리에 대한 취소할 수 없는 사용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가능한 한도에서 배타적이어야 한다. 을은 **성과물**이 점진적으로 완성되는 상황에 맞추어 사용권의 양도에 착수하여야 한다

22.2.3 관련 **주문서**에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공급품**의 대금에는 을이 **성과물**을 양도한 것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

22.3 제3자의 지적/산업재산권

22.3.1 을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하도급업자를 포함한 어떤 제3자의 지적/산업재산권을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2.3.2 만일 을이 제3자의 지적/산업재산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일 승인을 받은 경우, 을은 해당 제3자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라이선스 계약에는 갑을 위한 적절한 사용권도 포함되어야 한다. 을은 제3자의 지적/산업 재산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로열티 기타 보수를 부담한다.

22.3.3 을은 갑이 **선제하는 권리, 성과물 및 공급품/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제3자의 지적/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한다. 을은 지식/산업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제3자가 제기한 청구로부터 Faurecia 면책 당사자들을 면제, 방어, 면책하고 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을은 이러한 절차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비용, 경비 및 재무적 결과를 부담한다. 을은 위 절차와 관련한 갑 및/또는 Faurecia 그룹과 사이의 상당한 결정(특히 합의 체결, 청구 철회, 청구인락 등을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이를 조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갑은 상기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 또한 상기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22.3.4 보다 구체적으로, 을이 계약 이행 과정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FOSS (성과물에 포함되거나 성과물의 사용에 필요한 것을 포함)와** 관련하여, 을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 을은 본 계약 체결 전,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그 계약 이행 중에, 을이 사용하고자 하는 (**성과물에 포함되거나 성과물의 사용에 필요한**) **FOSS** 의 완전하고 포괄적이며 세부적인 목록을 갑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이에는 특히 각 **FOSS** 의 명칭, **오픈 소스 라이선스**의 명칭, 버전 또는 수정 번호 및 출처 표시 (원본 다운로드 URL)이 포함된다;
- 을은 갑에게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기타 유용한 정보의 사본 일체를 정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는 **Copyleft** 라이선스를 명확하게 특정함으로써 **성과물**과 관련한 **FOSS** 와 연관된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다;
- 을은 다음 각 항목을 갑에게 제출하여서는 아니되며, 특히 다음 각 항목들은 **성과물** 내외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i) 기저에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조건에 대하여 갑이 사전 서면 동의하지 않은 **FOSS** 및/또는 (ii) 기 사용된 상이한 **FOSS** 와의 비호환성을 야기할 수 있거나 **성과물**에 포함된 **전유적 사이런스**와의 비호환성을 초래할 수 있는 **비호환적 라이선스**의 대상이 되는 소프트웨어. 특히,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성과물** 내에 또는 **성과물**과 함께 어떠한 **Copyleft**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 을은 **성과물**을 회사에 인도하기 전에 (i) 을이 유효하게 사용한 **FOSS** 및 **오픈 소스 라이선스**를 명시하고, (ii) 합의된 **FOSS** 감사 툴을 사용하여 결론을 도출한 보고서를 공개한다;
- 을이 **성과물**에 포함된 **FOSS**를 수정한 경우, 갑이 **성과물**에 포함된 **FOSS**의 실행 가능한 버전을 생성 및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구축 스크립트를 갑에게 추가로 제공한다;
- 을은 갑에 전달된 위 정보는 본 계약 제 23 조에 따른 기밀정보의 특성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다. 갑은 해당 정보를 제 3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
- 계약 기간 및 성과물의 업데이트 지원을 위하여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의한 아래 기간 동안, 을은 소스코드, 그에 상응하는 목적코드 및 기타 각 적용 가능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오픈 형식으로 갑에게 제공한다.
 - FOSS를 포함한 관련 성과물 인도 시점;
 - FOSS를 포함한 성과물의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시점; 및
 -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

22.3.5 갑의 본 계약 해지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침해함이 없이, 갑이 **성과물** 및/또는 **공급품/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중단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즉시 자신의 비용으로, 그리고 갑의 단독 재량에 따라 아래 중 하나의 구제수단을 이행하여야 한다.

- 갑, **Faurecia 그룹** 및/또는 **고객사**가 추가 비용 없이 해당 **성과물** 및/또는 **공급품/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 3자로부터 사용권 확보; 및
- 위 제 22.3.2 항에 명시된 것과 같이 제 3자의 지적/산업재산권의 침해를 중지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공급품/서비스를 교체 또는 수정하는 행위.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갑의 현장에 있으나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공급품/서비스**를 자신의 비용으로 즉시 회수하기로 한다.

23 기밀 유지

23.1 계약당사자들은 본 계약으로 인하여 알게 된 여하한 형태의 정보 (구두, 서면, 자기적 또는 전기적 형태를 포함, 이하 "**기밀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기로 한다. **기밀정보**에는 특히 상업 및 재무 문서, 기술 상세, 데이터, **기술사양, 성과물**, 소프트웨어, 사업계획, 디자인, 연구, 권고, 개인정보, 노하우 및 기타 지적/산업재산권이 포함되며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음 사항들은 기밀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이미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
-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게 된 정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접근이 가능하게 된 경우는 제외);
- 전적으로 자유로운 공개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수령한 정보; 또는
- 법령, 판결 또는 규제 당국의 결정에 의하여 공개할 의무가 있는 정보.

23.2 계약당사자들은 각자 다음 사항을 확약한다.

- **기밀정보**를 본 계약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한다. 상대방의 승인을 받아 **기밀정보**를 공개하는 계약 당사자는 해당 제 3자로 하여금 본 조항에 정한 동일한 조건 및 의무에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밀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거나 재생산하지 아니한다.

- 23.3 도면, 모델, 템플릿, 샘플 및 이와 유사한 것은 승인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접근하게 할 수 없다. 이러한 물건의 복제는 그 복제가 필요하고, 저작권법의 규정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 23.4 본 계약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 당사자들이 별도의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 그러한 비밀유지약정은 본 23조에 우선한다.

24 개인정보 보호

24.1 일반 조항

- 24.1.1 을은 본 조에 규정된 확약사항 및 의무를 준수하고, 특히 아래 명시된 바와 동일한 확약사항 및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을의 직원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을 불문) 및 하도급업자가 본 계약의 조건을 존중하도록 한다. 그에 따라, 을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권한 있는 자가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한 교육을 받고, 기밀유지를 확약하였거나 적절한 법적 기밀유지의무를 부담하도록 할 것을 확약한다.
- 24.1.2 본 **계약** 제23조 및 제24조의 목적상, 갑은 갑을 대리하여 (갑 대신 갑의 관계사 중 일방이 본 조의 목적상 개인정보처리자가 되는 경우 관계사들 명의로 관계사들을 대리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다. 당사자들은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 및 해당되는 경우 EU 일반 정보보호규정 n°2016/679 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24.1.3 갑은 갑의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이며, 특히 **개인정보처리자**로서 갑의 고객 및/또는 갑의 직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24.1.4 **공급품/서비스**의 목적상, **주문서** 또는 **특수 조건**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갑이 을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하거나 을이 자신의 통제 하에 있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을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수 있다. 갑이 을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명시한 문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나아가, 갑은 을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경우 갑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고지한다.
- 24.1.5 갑 및 개인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는 한, 을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또는 제 3자를 위하여 갑의 정보 시스템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사용, 복사하거나 파일을 생성하지 않을 것을 확약 및 보증한다.
- 24.1.6 각 계약당사자는 관할 개인정보 보호 당국에 의하여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요구되는 모든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계약 당사자들은 모든 법적으로 요구되는 관련 문서들 (내부 기록 등)을 생성하고 문서화한다. 을은 갑에게 그 자체 양식 및 내부 문서 자료의 완성을 위하여, 또는 관련 정보보호 규제 준수를 위하여 양식, 내부 또는 외부 기록과 관련한 모든 관련 정보 (만일 적용가능한 경우 위험 분석, 정보 보호 영향 평가 등) 를 제공하기로 한다.
- 24.1.7 을은 본 계약 조항을 포함,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세부 계약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기로 한다

- 24.1.8** 을은 갑 (또는 갑의 고객)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갑과 협력하여야 한다. 을은 정보주체가 을에게 제기한 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한다.
- 24.1.9** 을은 관련 개인정보주체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 받는 경우 이를 즉시 검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을은 또한 정보주체의 권리 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정보를 갑에게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을은 또한 갑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갑이 개인정보를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리고 개인정보주체의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4.1.10** 개인정보가 갑 또는 EU에 소재한 갑의 계열회사로부터 발생한 경우, 또는 EU 시민과 관련된 경우, 을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적용 가능한 관련 규정에 따라 유럽 연합 또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적정"인 제 3 국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또는
 - 을이 개인정보를 제 3 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개인정보당국 (BCR 등)의 특정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 24.1.11** 을은 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을에게 전송된 개인정보의 처리, 저장 및 전송의 지리적 위치를 언제든지 갑에게 알려야 한다.
- 24.1.12** 당사자들은 관련 정보보호당국의 요구(요청, 통제, 감사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을은 정보보호당국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및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지체 없이 갑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24.2 데이터 보안/사이버 보안

- 24.2.1**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을은 Faurecia가 전송하거나 Faurecia가 접근권을 부여한 정보 (개인정보 여부를 불문함)의 처리에 대한 완전한 보안을 보장한다. 우발적이거나 불법적인 파기, 분실, 변경, 무단 공개 또는 접근 (특히 정보 처리 과정에서 네트워크 내 정보 전송이 수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타 형태의 무단 처리 또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무단 정보제공으로부터 Faurecia를 보호하기로 한다.
- 24.2.2** 전항의 목적상, 을은 다음 사항을 약속한다.
- a) 상업적으로 최선의 기준에 따라, 그리고 최소한 본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충분한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갖추기로 한다;
 - b) 갑에게 보안 정책 (물리적 또는 논리적)을 제공한다. 나아가, 갑의 요청에 따라 공인 자격, 인가 또는 인증(ISO 27001 등), 특히 기술 문서, 연간 위험 분석 결과 및 정보 보안 효율성 테스트 등을 제출함으로써 역량, 조직 및 기술 통제 수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다;
 - c) Faurecia 의 보안 정책, 보안 기준 및 보안 절차를 준수한다;
 - d) 최신 기술이 적용된 요구사항에 따라 저장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거나 기타 다른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호한다;
 - e) 갑의 기밀정보를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전자기기 또는 을의 사업장에서 반출될 수 있는 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하지 않음으로써 모든 정보의 적절한 보안을 위한 적절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 및 기타 보호조치를 이행 및 유지한다. 단, 그러한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f) Faurecia 또는 Faurecia 의 고객과 개인정보를 교환함에 있어 안전조치 (암호화, 인증)함으로써 권한 없는 제 3 자의 이용 가능성을 차단한다 ; 그리고
 - g) 비밀번호 도단, 분실 또는 무단 정보 접근 또는 사용과 관련한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는 을의 사업장에서 업계 표준 이상의 물리적 보안조치를 구비하고 이를 시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 24.2.3 을은 갑에게 제공된 모든 **공급품** 및 또는 제공된 **장비** 및/또는 **서비스**가 해당 일자에 일반에 공개되고 Faurecia 또는 Faurecia 고객의 개인정보 또는 정보 시스템의 보안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보안 위반 또는 공격을 가능하게 하는 설계 결함 (이하 "**취약점**")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한다.
- 24.2.4 을은 **공급품** 및/또는 공급 및/또는 제공된 본건 **장비**와 관련하여 새로운 **취약점**이 확인된 경우 (을, 하도급업자, 제 3자 또는 공개적인 정보를 통해 확인된 경우를 불문함)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거나, 가격, 성능, **공급품/서비스** 및/또는 본건 **장비**의 기능, 또는 갑 또는 갑의 고객의 개인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결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을은 **취약점**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해결방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24.2.5 을은 개인정보의 보안 및 기밀유지에 관한 자신의 모든 의무에 대한 조치 및 증거 관리와 관련하여, 법령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최소 1년간 해당 증거를 추적하고 보존할 것을 보장한다.
- 24.2.6 사이버 보안 사고 또는 정보 보안 사고 (각, "사이버 보안 사고")로 인하여 을이 본 **계약**, **GPC**, **특수 조건** 또는 **주문서**를 위반하거나 위반할 가능성을 야기하는 경우 (**공급품**의 공급, **서비스**의 이행 또는 정보 접근의 지연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 을은 이러한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을이 해당 사이버 보안 사고를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내에)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 사실을 유선, 문자 또는 이메일로 갑에게 알려야 한다.
-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시 을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i) 갑에게 해당 사이버 보안 사고에 관하여 확인된 정보의 요약본 제공;
 - (ii) 해당 사이버 보안 사고의 영향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조치의 이행;
 - (iii) 갑이 요청하는 경우 사이버 보안 사고 및 그 대응에 관한 구체적 정보 제공;
 - (iv) 사이버 보안 사고의 근본 원인 및 취약점에 대한 조사; 및
 - (v) 해당 조사 완료 후 7 일 이내에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한 상세 설명, 해당 사고에 이르게 된 원인, 을이 수행한 향후 사고 발생 경감 조치, 사이버 보안 사고의 경과, 해당 사건의 가해자로 의심되는 자, 당해 사고로 인하여 정보 또는 정보의 접근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자 및 당해 사건이 갑에 미치는 금전적 영향을 포함한 서면 보고서의 제공.
- 24.2.7 위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하여,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사이버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갑의 요청에 따라 갑에게 접근 권한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사고를 조사함에 있어 갑에게 전적으로 협조한다. 을은 해당 사고에 대한 갑의 조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 또는 보안 및 **주문서**에 따른 을의 의무이행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시간 중 더 빨리 도래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 보안 사고의 지속을 중단하거나 향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시정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일 24 시간, 주 7 일, 연간 365 일 연락할 수 있는 을의 1 인 이상의 주요 보안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갑에게 제공한다.
- 24.2.8 사이버 보안 사고의 결과 갑이 본 계약에 따라 공급품/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을은 갑이 이와 관련된 모든 조사를 완료한 후에,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이에 비례하여 해당 **공급품/서비스**에 대한 **주문서**에 따른 대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을의 모든 면책의무 및 갑의 모든 상계권을 전제로 한다.
- 24.2.9 을의 정보 시스템은 바이러스, 악성코드, 트로이 목마, 웜, 시한폭탄, 스파이웨어 등 시스템을 손상, 삭제, 파괴, 복제, 잠금, 비활성화, hostage 유지 기타 유해하게 방해, 부정한 차단 또는 도용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기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루틴, 장치 또는 코드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을은 갑의 시스템 또는 정보의 보안 또는 기밀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술한 사항 (백도어(backdoor) 기타 컴퓨터 프로그래밍 루틴, 기기 또는 코드를 포함)이 자신의 정보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기타 보호조치를 이행한다.

24.2.10 을은 사이버 보안 사고와 관련된 을 또는 을의 대표자의 사업 또는 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으로부터 **Faurecia 면책 당사자들**을 면제, 방어, 면책 및 면책한다. 을의 문서에 Faurecia 면책 당사자들의 권리 또는 치유 방안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위 auscordmlan 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작용할 수 없다.

24.3 개인정보 위반

24.3.1 을이 보안사고 또는 갑 (또는 갑의 고객)의 개인정보 의무 위반을 겪는 경우, 을은 이를 알게 되는 즉시 갑에게 이를 알릴 것을 약속한다. 을은 개인정보 유출 관리를 위하여 연중무휴 (24/7, 365일) 연락 가능한 연락처를 제공한다.

24.3.2 을은 갑이 이를 처리하기 위한 조치 (개인정보 위반과 관련하여 관련 당국 및 관련자들에게 통지하는 것을 포함함)를 시행하는 것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을의 지원사항은 아래와 같다.

- 을은 법적 또는 규제적 절차와 관련하여 갑을 지원한다;
- 을은 개인정보의 유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모든 관련 정보를 갑에게 제공한다;
- 을은 개인정보 침해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개선조치 절차, 정보 시스템 보호 및 정보 보안에 대한 영향 등을 신속히 명시한다.
- 이러한 개인정보 위반에 대한 규제당국, 언론, 회사의 고객 또는 관련 정보주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갑과 협력하고 이를 동기화한다.

24.4 개인정보 삭제

24.4.1 본 계약 기간 동안 또는 본 계약 26조에 따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갑 또는 갑의 고객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 및/또는 반환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 달리 요구되지 않는 한 기존 사본을 삭제하여야 한다.

24.4.2 삭제는 보안이 보장된 방식과 (재구성 가능성이 없는) 확정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데이터 처리에 사용된 을 및 을의 하도급업자의 모든 장비 또는 정보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4.4.3 을은 을의 **하도급업자** 또한 합리적 기간 내에 동일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4.5 하도급업자

24.5.1 을이 고용한 **하도급업자**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정해진 위탁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본 계약 및 본 제2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과 동일한 모든 정보보호의무, 기준 및 보안 정책을 규정하여야 한다.

24.5.2 을이 **하도급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위탁하는 경우 전송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안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24.5.3 을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안에 관한 본 조의 규정에 따른 을의 하도급업자의 의무 이행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

24.5.4 을은 갑 또는 갑 **고객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위탁업자의 목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최소 연 1회 업데이트 되어야 한다.

25 샘플, 프로토타입, 공구

25.1 주문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을은 본 **계약**에 따라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한 **장비**의 소유권 및 위험을 갑에게 이전한다. 소유권 및 위험의 이전은 본 계약 제21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 25.2 갑이 을에게 본 **계약** 이행을 위하여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계약 당사자들은 을이 해당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이에 상응하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통상적인 마모로 인하여 개조가 필요한 경우, 신규 장비의 출시와 호환되는 기간 내에, 이를 통지한다.
- 25.3 **미사용**. 을은 관련 주문서에 따라 갑 또는 갑의 고객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공구 또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장비**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전대, 제3자 제공, 복제, 복사, 질권설정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 25.4 을은 자신의 비용으로 **장비**에 식별번호, 본건 **장비** 소유자의 성명 및 “FAURECIA의 자산으로, 매각, 양도 또는 질권설정을 할 수 없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표지판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 25.5 을은 본건 **장비**의 보관자로서 본건 장비의 분실, 도난, 손상 또는 파손의 위험으로부터 본건 **장비**를 보호하여야 한다. 을은 본건 장비를 작업 가능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마모 또는 변형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갑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을은 본건 장비의 교환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험 및 본건 장비가 제3자에게 초래할 수 있는 손해를 부보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을이 본건 장비와 관련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제 20조 규정이 준용된다.

26 계약 해지

26.1 위반으로 인한 해지

26.1.1 을이 본 **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항이 시정 가능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위반행위의 중지 및 그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를 치유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위 조치에는 (i) 본 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 및 (ii) 합리적인 기간 내에 기타 필요한 모든 적절한 시정조치가 포함된다. 갑은 을이 위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를 가진다.

26.1.2 을이 본 계약의 중요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위반사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 불가능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6.2 고객사 해지로 인한 해지

26.2.1 사유 여하를 불문하고, **고객사**가 갑에게 본 계약에 따른 공급품을 이용하여 제작하는 갑의 부품공급 프로그램을 수여하지 않는 경우, 갑은 수령확인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해지는 강행법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지 통지를 수령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6.2.2 갑의 **고객사**가 본 계약과 관련한 갑의 부품공급 프로그램을 종료하는 경우, 갑은 수령확인서를 첨부한 6개월 전 서면 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위 통지기간은 **고객사**가 갑과의 부품공급계약에 정한 통지기간 이상이 될 수 없다.

26.3 불가항력 상황 연장에 따른 해지

본 **계약** 이행이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보류되거나 중단되고, 그 중단이 이 (2) 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그 **불가항력**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수령 확인서를 첨부한 서면 통지로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때 **불가항력** 상황의 영향을 받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대금 지급 또는 보상 기타 어떤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조항에 따른 계약 해지는 해지 통지 수령 즉시 효력이 있다.

26.4 지배권 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지

갑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이후 제 3자가 을의 지배권을 직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본 조항에서 "지배"는 제 3자가 을의 주주총회 및/또는 의사결정기구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분 또는 의결권의 50% 이상을 취득한 경우를 의미한다.

26.5 계약 이행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의 계약 해지

계약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함)

- (i) 당사자 일방에 대한 청산 명령 또는 청산 결의안이 통과된 경우
- (ii) 당사자 일방에 대한 파산 신청에 따라 파산 결정이 내려진 경우
- (iii) 당사자 일방의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결정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본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 (iv) 기타 당사자의 재무사정 기타 사유로 본 계약을 계속 이행하기 객관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27 계약 해지 또는 만료의 결과

계약 종료의 원인을 불문하고, 본 **계약**의 조항 중 그 성격상 계약 해지 이후에도 존속하는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어떤 이유든 합리적 대가에 반하여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즉시 갑에게 을이 계약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원자재 및 부품 재고, 재공품 및/또는 완성된 공급품 및 또는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관련 안전 장비를 인도하여야 한다.

28 스페어 부품

28.1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을은 본 **계약**의 조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A/S 필요에 따라 공급품의 예비부품을 생산하는 데 동의한다. 위 사항을 제한함이 없이, 을은 계약기간 동안, 그리고 **고객사**가 갑에게 예비부품을 주문할 가능성이 있는 추가 기간 동안 언제든지 갑의 요청에 따라 갑에게 예비부품을 공급한다.

28.2 을은 예비부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도구 및 장비와 이에 상응하는 모든 도면, 설계 및 제조 공정을 제28.1조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로 한다.

28.3 예비부품의 대금은 제조 프로그램 기간 동안 유효한 대금과 동일하다. 단, 을이 갑에게 conditioning 비용 및 운송비용과 관련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제공하고, 갑이 이에 동의하는 경우 특수 컨디셔닝 및 운송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

29 불가항력 상황

29.1 불가항력의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계약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9.2 각 계약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불가항력 상황의 존재를 즉시 통지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을은, 그 자신의 비용으로, 실제 또는 잠재적인 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 또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에 (i) 비상 생산계획의 시행, (ii) 신속한 운송 및 선적, (iii) 대체 장소/관할지역을 통한 재료 구입 및 (iv) 갑의 명시적 서면 수권에 따라 갑의

완제품 또는 공급품 재고를 해당 지연 기간 동안 계속 공급이 가능하기에 충분한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을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이행을 지연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 갑은 공급품/서비스를 직접 제조/이행하거나 제3자로부터 공급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행받는 등 지속적인 부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9.3 보다 명확히 하면, 을은 을의 협력사 또는 하도급업자들이 의무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본 계약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의 의무 지연을 불가항력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 29.4 갑은 허용되는 지연이 있는 경우 **공급품**의 인도 및/또는 **서비스**의 이행 승낙을 지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허용가능한 지연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갑의 지시에 따라, 갑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허용가능한 지연의 원인이 제거될 때까지 **공급품** 생산을 중단하거나 서비스 이행을 지연하여야 한다.
- 29.5 본 계약에 따른 을의 의무를 제한함이 없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공급물량을 배분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모든 공급품에 대하여 갑을 우선으로 하고, 주문서에 따라 주문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우선 배정한다.

30 갑의 웹사이트

- 30.1 갑의 인터넷 웹사이트(또는 갑의 웹사이트상의 링크로 연결되는 기타 웹사이트 또는 갑이 제공하는 기타 공급자 포털) (이하 "**갑의 웹사이트**")에는 공급망 및 물류, 라벨링, 포장, 배송, 인도 및 품질 사양, 절차, 지시 및/또는 지침 등 **주문서**에 포함된 특정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요건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한 요건은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주문서**에 적용된다. 갑은 갑의 웹사이트에 수정사항을 게시함으로써 그러한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 30.2 갑은 **주문서**의 조건, GPC, QAA, 행동강령, 특수 조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한 수정 조건을 회사의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수시로 수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경된 조건은 회사의 변경 약관 게시 효력발생일 이후에 발행된 모든 주문서 및 주문서 수정본에 적용된다. 을은 회사의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회사의 웹사이트에 업데이트 조건이 게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건 계약 또는 구매주문서의 업데이트에 대한 통지를 포기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

31 준거법 - 관할

- 31.1 본 **계약**은 갑의 주 사무소의 관할 법역에 적용되는 국내법이 적용된다.
- 31.2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어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만일 분쟁 발생 후 60일이 경과하여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한 발생되는 모든 분쟁 (warranty claim을 포함)은 대한상사 중재원에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 한다. (단,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진행시 가능한 경우 신속 절차제도를 이용한다.)

32 일반 조항

32.1 하도급업자

- 32.1.1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하도급업자**를 이용하여 **공급품** 제작 또는 **서비스** 이행을 할 수 있다. 을은 계약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하도급업자**들이 적절하게 훈련받았고, 본 **계약**에 정한 계약조항들 (특히 비공개 의무)을 준수한다는 점을 계약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확약하여야

한다. 제작을 위한 하도급업자를 사용할 수 없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전부 또는 일부 하도급계약해서는 안된다.

갑이 하도급에 동의하더라도 이는 을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을은 **하도급업자**의 작위 및 부작위에 대하여 제한 없는 책임을 부담한다.

32.2 채권의 양도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동의를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아니됨)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을 양도할 수 없다.

32.3 상계

을은 갑이 인정한 (또는 법상 인정되는) 갑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할 수 있다.

32.4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

서면으로 이와 달리 명시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 당사자들 사이에 사실상의 회사, 공동 투자 회사, 대행사 또는 기타 임의의 성격의 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갑과 갑의 계열사(들) 사이 또는 갑의 계열사들 사이에 연대 책임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계약 당사자들 중 일방이 제 3자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대행인 또는 대표자로 행동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기타 수단으로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임의의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 **공급품/서비스**의 납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이익이 되는 배타적 공급계약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

32.5 계약의 양도

갑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의 계열사 또는 갑 또는 갑의 계열사의 관련 지분을 취득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한 이전이 있는 경우, 을은 당해 제3자가 본 **계약**에 정한 계약상 의무를 지속가능하게 이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사실을 입증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32.6 가분성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법원의 판결, 중재판정, 공정거래위원회 기타 규제기관의 결정, 또는 관련 법률에 따라 무효, 불법, 집행불가능하거나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본 **계약**의 조항은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로 축소 및 제한되며, 영향을 받거나 손상되지 않는 본 **계약**의 기타 모든 조항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관련 법률에 위배되는 무효, 불법, 집행 불가능한 조항을 관련 법률에 따라 당사자들의 원래 의도와 가능한 근접하게 유효한 조항으로 재협상하고 대체할 의무가 있다.

32.7 일자 및 근무일

법령상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 모든 날짜는 양력에 따른다;
- 근무일은 토요일, 일요일 및 갑의 등록소재지의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평일로 한다;

- 모든 물량에 대해서는 국제 체중측정국의 국제 단위 (SI)가 적용된다.

32.8 권리 포기 아님

계약 당사자 일방이 어느때건 본 계약 또는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러한 조항을 적용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해당 조항 또는 임의의 다른 조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권리를 계속 보유한다.

32.9 원산지 증명

적용가능한 경우, 을은 각 송장에 공급품의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제공하며, 해당 원산지신고증명서는 각 역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유효하여야 한다. 원산지와 관련하여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을은 이를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새로운 장기 공급자 신고서를 자발적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적용가능한 경우, 만일 을이 상기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품의 우대와 관련하여 상충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을은 상기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무적 결과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32.10 ESG 경영

을은 전세계적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ESG 경영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며, 갑의 ESG 경영 관련 자격 및 평가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의 권한 있는 자가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2 년 월 일

(갑)

(을)

[회사명]

[회사명]

(주소)

(주소)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